

제465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시: 2023년 1월 26일(목) 15:00 ~ 17:00 (회의소집 통보일: 2023년 1월 13일)
2. 장소: 본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명	박언표, 서의택, 강신혁, 안진환, 정주철, 하선규, 김상권	
	감사 2명	정 일, 황성철	
불참 임원	이사 1명	윤성복	
	감사 0명		

4. 안건

가.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규칙 및 행동강령 제정의 건

- 신라대학교 직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 박영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다. 교원임용의 건

- 신라대학교 특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2023학년도 편제개편에 따른 교원 소속변경(겸직포함) 임용에 관한 사항

라. 교원 명예퇴직의 건

- 신라대학교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마.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신라대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신라중학교 2022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신라중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바. 임원 선임의 건

- 이사 선임 및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박언표	김상권	황성철
-----	-----	-----

- 상근이사 지정 및 대우에 관한 사항
- 사. 보통재산 폐기의 건
-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도서) 폐기에 관한 사항
- 아. 기타사항

5. 회의내용

의장은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재직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제46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접수하다.

가.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의장은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제시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관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정관 변경의 건은 【별첨 1】 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정관 변경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나. 규칙 및 행동강령 제정의 건

- 신라대학교 직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 박영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의장은 규칙 및 행동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규칙 및 행동강령 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규칙 및 행동강령 제정의 건은 【별첨 2】 , 【별첨 3】 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다. 교원임용의 건

- 신라대학교 특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2023학년도 편제개편에 따른 교원 소속변경(겸직포함) 임용에 관한 사항

의장은 교원 임용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박영학원	김영진	홍성원
------	-----	-----

신라대학교 부총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신라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 제청한 교원 임용의 건을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교원 임용의 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1. 신라대학교 특임교수 임용

● 신규임용

연번	모집단위	모집분야	성명	임용사항			비고
				소속	직급	임용기간	
1	입학관리처	입학관리 및 홍보		입학관리처	특임교수	2023.03.01 ~2024.02.29	

2. 신라대학교 2023학년도 편제개편에 따른 교원 소속변경(겸직 포함) 임용

연번	단과대학	학부(과)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단과대학	학부(과)	임용일	겸직	
1	보건복지대학	제약공학과	교수		보건복지대학	제약화장품학과	'23.03.01		명칭변경
2	보건복지대학	제약공학과	조교수		보건복지대학	제약화장품학과	'23.03.01		명칭변경
3	보건복지대학	제약공학과	교수		보건복지대학	제약화장품학과	'23.03.01		명칭변경
4	보건복지대학	제약공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보건복지대학	제약화장품학과	'23.03.01		명칭변경
5	보건복지대학	제약공학과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보건복지대학	제약화장품학과	'23.03.01		명칭변경
6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23.03.01		학과전환
7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23.03.01		학과전환
8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23.03.01		학과전환
9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조교수 (연구전담)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23.03.01		학과전환
10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23.03.01		학과전환
11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조리학전공	교수		보건복지대학	식품조리학과	'23.03.01		학과전환
12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조리학전공	교수		보건복지대학	식품조리학과	'23.03.01		학과전환
13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조리학전공	부교수		보건복지대학	식품조리학과	'23.03.01		학과전환
14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조리학전공	조교수 (계약제)		보건복지대학	식품조리학과	'23.03.01		학과전환

박인영	김상진	함성원
-----	-----	-----

연 번	단과대학	학부(과)	직 급	성 명	임 용 사 항				비고
					단과대학	학부(과)	임용일	겸직	
15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조리학전공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보건복지대학	식품조리학과	'23.03.01	인재개발처	학과전환
16	인문상경대학	문예창작비평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23.03.01		명칭변경
17	인문상경대학	문예창작비평학과	부교수		인문상경대학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23.03.01		명칭변경
18	인문상경대학	문예창작비평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23.03.01		명칭변경
19	인문상경대학	역사문화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문화콘텐츠학과	'23.03.01		명칭변경
20	인문상경대학	역사문화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문화콘텐츠학과	'23.03.01		명칭변경
21	인문상경대학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3.03.01		주소속변경
22	인문상경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보건복지대학	경찰행정학과	'23.03.01	공무원법학과	단대변경
23	인문상경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대학	경찰행정학과	'23.03.01		단대변경
24	인문상경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보건복지대학	경찰행정학과	'23.03.01		단대변경
25	인문상경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보건복지대학	경찰행정학과	'23.03.01		단대변경
26	인문상경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보건복지대학	경찰행정학과	'23.03.01	공무원법학과	단대변경
27	인문상경대학	행정공무원학과	부교수		인문상경대학	행정학과	'23.03.01	국제관계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명칭변경, 겸직추가
28	인문상경대학	행정공무원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행정학과	'23.03.01		명칭변경
29	인문상경대학	행정공무원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행정학과	'23.03.01		명칭변경
30	인문상경대학	행정공무원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행정학과	'23.03.01	중국어중국학과	명칭변경
31	인문상경대학	행정공무원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인문상경대학	행정학과	'23.03.01		명칭변경
32	인문상경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인문상경대학	호텔·의료관광 경영학부	'23.03.01	항공서비스학과, 지리학과	학부전환, 명칭변경
33	인문상경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호텔·의료관광 경영학부	'23.03.01		학부전환, 명칭변경
34	인문상경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인문상경대학	호텔·의료관광 경영학부	'23.03.01		학부전환, 명칭변경
35	인문상경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호텔·의료관광 경영학부	'23.03.01		학부전환, 명칭변경
36	인문상경대학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인문상경대학	호텔·의료관광 경영학부	'23.03.01		학부전환, 명칭변경
37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38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39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40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글로벌경제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겸직추가

184 인문상경대학 교수 이상진

연 번	단과대학	학부(과)	직 급	성 명	임 용 사 항				비고
					단과대학	학부(과)	임용일	겸직	
41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중국어중국학과, 한중비즈니스학과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겸직추가 (국제대학신설)
42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43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44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인문상경대학	문화콘텐츠학과	'23.03.01	글로벌경제학과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주소속변경, 겸직추가
45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46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인문상경대학	광고홍보영상 미디어학부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부신설
47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교수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48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교수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49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50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51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52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주얼리디자인학전공	교수		디자인대학	주얼리 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53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주얼리디자인학전공	교수		디자인대학	주얼리 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54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주얼리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주얼리 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55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주얼리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주얼리 디자인학과	'23.03.01		모집정지(폐과) /학과신설
56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현대미술학전공	부교수		디자인대학	웹툰학과	'23.03.01	디자인미술학부 현대미술학전공	주소속변경(신 설학과), 겸직추가
57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현대미술학전공	부교수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현대미술학전공	'23.03.01	중국어중국학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한중비즈니스학과	겸직추가 (국제대학신설)
58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현대미술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디자인미술학부 현대미술학전공	'23.03.01	산업디자인 융합학과	겸직추가 (국제대학신설)
59	디자인대학	산업패션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교수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23.03.01	산업디자인 융합학과	학과전환, 겸직추가 (국제대학신설)
60	디자인대학	산업패션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23.03.01		학과전환

박연희 강성진 황성철

연번	단과대학	학부(과)	직 급	성 명	임 용 사 항				비고
					단과대학	학부(과)	임용일	겸직	
61	디자인대학	산업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학전공	교수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23.03.01		학과전환
62	디자인대학	산업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23.03.01		학과전환
63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과대학	배터리학과	'23.03.01		명칭변경
64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과대학	배터리학과	'23.03.01		명칭변경
65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과대학	배터리학과	'23.03.01		명칭변경
66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공과대학	배터리학과	'23.03.01		명칭변경
67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연구전담)		공과대학	배터리학과	'23.03.01		명칭변경
68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23.03.01	산업디자인학과	명칭변경, 학과전환 (겸직학과)
69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0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1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조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2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23.03.01	산업디자인학과	명칭변경, 학과전환 (겸직학과)
73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4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MICT 융합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5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항공정비학과	명칭변경
76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조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7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조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8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조교수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79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산학협력단 LINC3.0 사업단	명칭변경
80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81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82	MICT 융합공과대학	융합기계공학과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MICT 융합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3.03.01		명칭변경
83	교양과정대학	교양과정대학	교수		교양과정대학	교양과정대학	'23.03.01	중국어중국학과, 한중비즈니스학과	겸직추가 (국제대학신설)
84	교양과정대학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교양과정대학	교양과정대학	'23.03.01	K-Culture학과	겸직추가 (국제대학신설)

백인풍 개성리 황성원

연 번	단과대학	학부(과)	직 급	성 명	임 용 사 항				비고
					단과대학	학부(과)	임용일	점직	
85	교양과정대학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교양과정대학	교양과정대학	'23.03.01	K-Culture학과	점직추가 (국제대학신설)
86	인문사회과학 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국제대학	한중 비즈니스학과	'23.03.01	중국어중국학과	주소속변경 (국제대학신설), 점직추가
87	인문사회과학 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국제대학	한중 비즈니스학과	'23.03.01	중국어중국학과	주소속변경 (국제대학신설), 점직추가
88	인문사회과학 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국제대학	한중 비즈니스학과	'23.03.01	중국어중국학과	주소속변경 (국제대학신설), 점직추가
89	미래융합학과	미래융합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미래융합학과	'23.03.01	창조공예예술학부 무용전공, K-Culture학과	단대변경, 점직추가 (국제대학신설)
90	미래융합학과	미래융합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디자인대학	미래융합학과	'23.03.01		단대변경

라. 교원 명예퇴직의 건

• 신라대학교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의장은 교원 명예퇴직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대학교 부총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총장이 신라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팀-92호(2023.01.03.)로 컴퓨터공학부 교수 교양과정대학 교수 , 항공교통관리학과 교수 의 2023년 2월 28일자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 제청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마.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신라대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신라대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정일 감사 및 황성철 감사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신라대학교 기획조정처장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법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366,490천원 중 법인부담금(법정부담 전입금) 80,000천원을 제외한 부족분 2,286,490천원을 대학평의위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예산(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다.

백 연 동	김 장 권	황 성 철
-------	-------	-------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신라대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중 수입의 부에서 등록금수입 48,441,133천원, 전입및기부수입 26,895,606천원, 교육부대수입 2,521,129천원, 교육외수입 629,462천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 3,848,80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8천원, 고정부채입금 1,120,001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858,367천원, 지출의 부에서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부족분에 대한 교비회계 부담금 2,286,490천원을 포함한 보수 42,012,617천원, 관리운영비 8,237,143천원, 연구·학생경비 33,712,310천원, 교육외비용 674,442천원, 예비비 400,00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52,329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1,425,568천원, 유동부채상환 1,360,000천원, 고정부채상환 340,100천원으로 수입·지출 합계 각각 88,314,509천원정도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신라중학교 2022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신라중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으로 신라중학교 2022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중학교 교장은 미리 배부한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정일 감사 및 황성철 감사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신라중학교 2022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학년도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신라중학교 2022학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

회계기간 2022.03.01. ~ 2023.02.28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3회	3,954,209		3,920,458		33,751		0.9	
세입					세출			
장	관	기정예산대비증감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기정예산대비증감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12,000	0.3	인적자원운용	39,402	2,636,958	66.7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42,942	3,816,381	96.5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7,434	570,005	14.4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7,600	0.2	기본적교육활동	7,633	234,606	5.9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3,976	45,964	1.2	선택적교육활동	-3,706	30,016	0.8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5,215	65,979	1.7	교육활동지원	-2,765	163,869	4.1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6,285	0.1	학교일반운영	1,621	318,755	8.1
					학교재무활동	-1,000	0	0.0
	합 계	33,751	3,954,209	100.0	합 계	33,751	3,954,209	100.0

백인표	김성진	황성철
-----	-----	-----

■ 신라중학교 2023학년도 예산

회계기간 2023.03.01. ~2024.02.29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전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증감률(%)	최종예산	증감률(%)
본예산	3,723,790	3,929,019	3,707,597	-16,193	-0.4	-221,422	-5.6
세 입				세 출			
장	관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3,566,170	96.2	인적자원운용	2,547,201	68.7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5,000	0.1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565,084	15.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68,627	1.9	기본적교육활동	138,308	3.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67,800	1.8	선택적교육활동	13,671	0.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0.0	교육활동지원	132,646	3.6	
				학교일반운영	309,687	8.4	
				학교재무활동	1,000	0.0	
합 계		3,707,597	100.0	합 계		3,707,597	100

●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배부한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정일 감사 및 황성철 감사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학년도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회계기간 2022.03.01. ~2023.02.28

(단위 : 천원)

구분	관 별	추가경정 예산	본예산	증 감	증감률(%)
수입	보육료수입	216,445	216,445	0	0.0
	수익자부담수입	64,254	68,916	-4,662	-7.3
	보조금 및 지원금	59,817	62,302	-2,485	-4.2
	전입금	5,041	4,681	360	7.1
	적립금	8,504	1	8,503	100.0
	과년도수입	350	1	349	99.7
	접수입	12,109	7,116	4,993	41.2
	전년도이월액	1,043	2,000	-957	-91.8
	수입 총계	367,563	361,462	6,101	1.7

백인표 김상진 황성철

구분	관 별	추가경정 예산	본예산	증 감	증감율(%)
지출	인건비	213,006	218,729	-5,723	-2.7
	운영비	28,915	26,885	2,030	7.0
	보육활동비	40,032	43,164	-3,132	-7.8
	수익자부담경비	64,254	68,916	-4,662	-7.3
	적립금	11,509	2,400	9,109	79.1
	반환금	47	3	44	93.6
	재산조성비	398	1,362	-964	-242.2
	과년도지출	9,400	1	9,399	100.0
	잡지출	1	1	0	0.0
	예비비(차기이월금)	1	1	0	0.0
	지출 총계	367,563	361,462	6,101	1.7

■ 신라대학교 어린이집 2023학년도 예산

회계기간 2023.03.01. ~ 2024.02.29

(단위 : 천원)

구분	관 별	2023 예산	2022 예산	증 감	증감율(%)
수입	보육료수입	232,921	216,445	16,476	7.1
	수익자부담수입	78,770	64,254	14,516	18.4
	보조금 및 지원금	66,729	59,817	6,912	10.4
	전입금	5,041	5,041	0	0.0
	적립금	1	8,504	-8,503	-850,300.0
	과년도수입	1	350	-349	-34,900.0
	잡수입	12,230	12,109	121	1.0
	전년도이월액	1,827	1,043	784	42.9
	수입 총계	397,520	367,563	29,957	7.5
지출	인건비	225,988	213,006	12,982	5.7
	운영비	36,735	28,915	7,820	21.3
	보육활동비	44,030	40,032	3,998	9.1
	수익자부담경비	78,770	64,254	14,516	18.4
	적립금	11,569	11,509	60	0.5
	반환금	3	47	-44	-1,466.7
	재산조성비	422	398	24	5.7
	과년도지출	1	9,400	-9,399	-939,900.0
	잡지출	1	1	0	0.0
	예비비(차기이월금)	1	1	0	0.0
	지출 총계	397,520	367,563	29,957	7.5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배부한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익사업전입금 91,200천원은 2021학년도 수익사업회계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34,838,084원 외에 2022학년도 전출금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2022학년도 수익사업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설정 예정금액 중 56,361,916천원을 당기에 집행하고자 함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정 일 감사 및 황성철 감사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

박영환	김상진	황성철
-----	-----	-----

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학년도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법인일반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회계기간 2022.03.01.~2023.02.28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2022학년도 2차추경예산(A)	2022학년도 1차추경예산(B)	증감(A-B)	증감률(%)	관	2022학년도 2차추경예산(A)	2022학년도 1차추경예산(B)	증감(A-B)	증감률(%)
전입및기부수입	561,200	557,000	4,200	0.7	보수	75,700	75,700	0	0.0
교육외수입	11	11	0	0.0	관리운영비	52,801	53,401	-600	-1.1
고정부채입금	1	1	0	0.0	교육외비용	3,810	4,000	-190	-5.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29	1,829	0	0.0	전출금	373,000	368,000	5,000	1.3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	1	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5	5	0	0.0
					유동부채상환	57,672	57,672	0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2	62	-10	-19.2
합 계	563,041	558,841	4,200	0.7	합 계	563,041	558,841	4,200	0.7

■ 법인수익사업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회계기간 2022.03.01.~2023.02.28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2022학년도 2차추경예산(A)	2022학년도 1차추경예산(B)	증감(A-B)	증감률(%)	관	2022학년도 2차추경예산(A)	2022학년도 1차추경예산(B)	증감(A-B)	증감률(%)
교육외수입	80,112	48,702	31,410	39.2	관리운영비	563,616	600,205	-36,589	-6.5
투자외기타자산수입	2,555,000	2,555,000	0	0.0	교육외비용	2	2	0	0.0
고정자산매각수입	1	1	0	0.0	전출금	91,200	77,000	14,200	15.6
고정부채입금	1,000,001	1	1,000,000	100.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	1	0	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81,620	81,620	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1,145,002	2,000,002	-855,000	-74.7
			0		고정부채상환	1	1	0	0.0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916,912	8,113	1,908,799	99.6
합 계	3,716,734	2,685,324	1,031,410	27.8	합 계	3,716,734	2,685,324	1,031,410	27.8

■ 법인일반 2023학년도 예산

회계기간 2023.03.01.~2024.02.29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2023학년도 예산(A)	2022학년도 예산(B)	증감(A-B)	증감률(%)	관	2023학년도 예산(A)	2022학년도 예산(B)	증감(A-B)	증감률(%)
전입및기부수입	274,000	561,200	-287,200	-104.8	보수	75,900	75,700	200	0.3
교육외수입	11	11	0	0.0	관리운영비	54,021	52,801	1,220	2.3
고정부채입금	1	1	0	0.0	교육외비용	4,000	3,810	190	4.8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2	1,829	-1,777	-3,417.3	전출금	82,000	373,000	-291,000	-354.9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	1	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5	5	0	0.0
					유동부채상환	57,672	57,672	0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65	52	413	88.8
합 계	274,064	563,041	-288,977	-105.4	합 계	274,064	563,041	-288,977	-105.4

백인풍 김상권 황성원

■ 법인수익사업 2023학년도 예산

회계기간 2023.03.01.~2024.02.29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2023학년도 예산(A)	2022학년도 예산(B)	증감(A-B)	증감률(%)	관	2023학년도 예산(A)	2022학년도 예산(B)	증감(A-B)	증감률(%)
교육외수입	132,002	80,112	51,890	39.3	관리운영비	24,343	563,616	-539,273	-2,215.3
투자외기타자산수입	0	2,555,000	-2,555,000	-100.0	교육외비용	30,001	2	29,999	100.0
고정자산매각수입	1	1	0	0.0	전출금	53,000	91,200	-38,200	-72.1
고정부채입금	120,000	1,000,001	-880,001	-733.3	투자외기타자산처출	1	1	0	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916,912	81,620	1,835,292	95.7	고정자산매입지출	1,941,002	1,145,002	796,000	41.0
					고정부채상환	120,000	1	119,999	1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68	1,916,912	-1,916,344	-337,384.5
합 계	2,168,915	3,716,734	-1,547,819	-71.4	합 계	2,168,915	3,716,734	-1,547,819	-71.4

바. 임원 선임의 건

• 이사 선임 및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의장은 임원 선임의 건 중 2023년 4월 26일자로 본인(박언표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2023년 4월 17일자로 서의택 이사(교육경험 이사), 강신혁 이사, 안진환 이사(교육경험 이사), 윤성복 이사, 하선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며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임원 선임 신·구대비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임원선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먼저 본인(박언표 이사장)의 후임 이사 선임을 상정하고, 자신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퇴장함.

(박언표 이사장 퇴장, 참석이사 상호 의견 교환 끝에 최연장자인 서의택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호선하고, 서의택 이사는 임시의장을 즉석에서 수락함)

임시의장인 서의택 이사는 박언표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에 관한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안진환 이사가 박언표 이사장은 설립자인 故 박영택 선생 및 故 박해곤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신라대학교와 신라중학교의 발전에 평생을 헌신하고 계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므로 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박언표 이사장을 제외한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안진환 이사의 제의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박언표 이사장을 제외한 참석이사 6명이 찬성하므로,

임시의장인 서의택 이사는 2023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 4년간 본 법인 이사로 박언표 이사가 재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박언표 이사장 입장, 임시의장인 서의택 이사로부터 재선임 되었음을 구두로 통보 받고 회의를 진행하다.)

박 언 표	강 신 혁	윤 성 복
-------	-------	-------

의장은 다음으로 서의택 교육경험 이사 후임의 이사 선임을 상정하고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서의택 이사를 퇴장케 하다.

(서의택 이사 퇴장)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하선규 이사가 서의택 교육경험 이사는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도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으로 대학사회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도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실 분이므로 교육경험 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서의택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 전원이 하선규 이사의 제의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서의택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027년 4월 17일까지 4년간 본 법인 교육경험 이사로 서의택 이사가 재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서의택 이사를 입장케 하다.

(서의택 이사 입장, 의장으로부터 재선임 되었음을 구두로 통보 받음.)

의장은 다음으로 강신혁 이사 후임의 이사 선임을 상정하고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강신혁 이사를 퇴장케 하다.

(강신혁 이사 퇴장)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김상권 이사가 강신혁 이사는 역사계에 명망 있는 의료인일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경험도 갖추고 있어 본 법인의 발전에는 물론이고 신라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의 보건계열 관련학과의 발전에도 현장감 있는 조언을 하실 수 있는 훌륭한 분이므로 재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강신혁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 전원이 김상권 이사의 제의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강신혁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027년 4월 17일까지 4년간 본 법인 이사로 강신혁 이사가 재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강신혁 이사를 입장케 하다.

(강신혁 이사 입장, 의장으로부터 재선임 되었음을 구두로 통보 받음.)

의장은 다음으로 안진환 교육경험 이사 후임의 이사 선임을 상정하고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안진환 이사를 퇴장케 하다.

(안진환 이사 퇴장)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하선규 이사가 안진환 교육경험 이사도 대학 총장을 역임한 바 있고, 본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므로 교육경험 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안진환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 전원이 하선규 이사의 제의에

하선규	김상권	황성원
-----	-----	-----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안진환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027년 4월 17일까지 4년간 본 법인 교육경험 이사로 안진환 이사가 재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안진환 이사를 입장케 하다.
(안진환 이사 입장, 의장으로부터 재선임 되었음을 구두로 통보 받음.)

의장은 다음으로 윤성복 이사 후임의 이사 선임을 상정하고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정주철 이사가 윤성복 이사는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로서 2011년 4월 20일부터 본 법인의 감사를 역임하였고, 2015년 11월 12일부터 본 법인의 이사를 역임하면서 법인과 학교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므로 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정주철 이사의 제의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027년 4월 17일까지 4년간 본 법인 이사로 윤성복 이사가 재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은 다음으로 하선규 이사 후임의 이사 선임을 상정하고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하선규 이사를 퇴장케 하다.

(하선규 이사 퇴장)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안진환 이사가 하선규 이사 역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신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부산YWCA 이사 및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랜 기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므로 본 법인 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하선규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안진환 이사의 제의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하선규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6명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027년 4월 17일까지 4년간 본 법인 이사로 하선규 이사가 재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하선규 이사를 입장케 하다.
(하선규 이사 입장, 의장으로부터 재선임 되었음을 구두로 통보 받음.)

의장은 다음으로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2023년 4월 26일로 만료되어 임기 개시 후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해야 하나, 그럴 경우 절차상으로 이사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전 안전에서 임기만료 예정 이사 모두 유임됨에 따라 금번 이사회에서 본 법인 정관 제26조에 의거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하며,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는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하선규 이사는 설립자 故 박영택 선생과 故 박해곤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본 법인과 본 법인

백영택	박영택	황성원
-----	-----	-----

이 설치경영하는 신라대학교와 신라중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現 박언표 이사장의 해안과 열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임기인 2027년 4월 26일까지 現 박언표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의장은 차기 이사장 선출에 관한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2023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 본 법인 이사장으로 박언표 이사장이 재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인 박언표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으로 재선임 되었음에 참석 이사들에게 답례 인사 후, 교육부에 임원취임 승인 신청 등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 상근이사 지정 및 대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상근이사 지정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본 법인 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임원 중 이사장 및 이사장이 지정하는 1인의 이사는 상근이사로 할 수 있으며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상근이사 지정에 대하여 참석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자, 김상권 이사가 원활한 법인 운영을 위하여 박언표 이사장을 이사 임기까지 상근이사로 지정하고 상근이사의 대우는 현행과 같이 비과세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월3,200,000원으로 지급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김상권 이사의 제의에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박언표 이사장의 임기까지 상근이사로 지정하고, 상근이사의 대우는 현행과 같이 비과세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월3,200,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사. 보통재산 폐기의 건

●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도서) 폐기에 관한 사항

의장은 보통재산 폐기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 제34조(감가상각) 및 도서관규정 제31조(제적대상)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자정보원과 도서 감가상각 연수를 초과하고 자료 가치가 상실된 도서를 폐기하고자 함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의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보통재산 폐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에 의거,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정자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선언하다.

박 언 표	김 상 권	황 성 철
-------	-------	-------

○ 도서 : 금236,705,882원

구 분	종 수	구독금액(원)	비 고
전자정보원	11	236,705,882	2021학년도 구입분
계	11	236,705,882	

아.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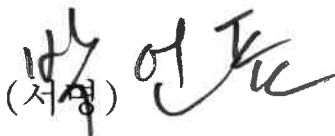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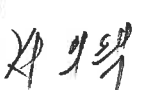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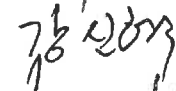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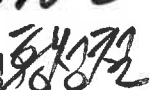
법인 사무국장은 구서동에 신축 중인 '신라 구서1빌딩'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참석이사 상호간에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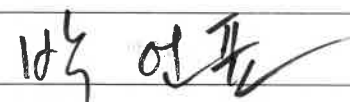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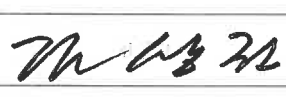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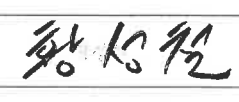
6. 간서명 임원선임

의장은 금일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 할 임원으로 3인을 추천 요청하고, 하선규 이사가 박언표 이사장, 김상권 이사, 황성철 감사 3인을 추천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박언표 이사장, 김상권 이사, 황성철 감사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7. 폐회선언

안건 처리가 다 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 박영학원 이사장 박언표 (서명) 
 이 사 서의택 (서명) 
 이 사 강신혁 (서명) 
 이 사 안진환 (서명) 
 이 사 정주철 (서명) 
 이 사 하선규 (서명) 
 이 사 김상권 (서명) 
 감 사 정 일 (서명) 
 감 사 황성철 (서명) 

		
---	---	---

【별첨 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장 교직원 제6절 행동강령	제6장 교직원 제6절 행동강령	※ 사학기관 행동강령 시정요청에 따른 수정 ※ 항 신설 및 수정
제88조의3 (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 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의3 (청렴의무 등) ①학교법인 박영학원의 이사장,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 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 령은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 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 항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 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 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 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 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 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 신설 ※ 항 신설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 관 행동강령) 반영
제88조의4 (행동강령) 제88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	제88조의4 (행동강령) (삭제)	※ 항 신설 ※ 조 삭제

박영환 김상진 황성철

현행	개정안	비고
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3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2 (학장·대학원장 등) ①대학교의 각 단과 대학(교양과정교육을 전담하는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학장을,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로 보한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는 부학장을, 대학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과 부원장은 부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 설) 제91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사무처, 교육지원처, 학생지원처, 재무처, 기획조정처, 입학관리처, 국제교류처, 인재개발처, 대외협력실, 감사실 및 교육혁신본부를 둔다. ②교육지원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관리처장, 국제교류처장, 인재개발처장, 교육혁신본부장은 부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감사실장, 기획조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대학교에 3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 (학장·대학원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제1항의 업무 분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1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처, 실, 본부를 둔다. ②제1항의 조직에는 처장, 실장 및 본부장을 둔다.	※ 부총장 자격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학장, 대학원장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하부조직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하부조직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박연홍 김성진 황성철

현행	개정안	비고
정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사무처장, 재무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대외협력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처, 학생지원처, 기획조정처, 입학관리처에는 각각 부처장을 둘 수 있고, 국제교류처에는 2인 이상의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사무처에는 총무팀, 시설관리팀을 둔다. ⑤교육지원처에는 학사지원팀, 교직과정운영팀, 학적관리팀을 둔다. ⑥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팀을 둔다. ⑦재무처에는 경리팀을 둔다. ⑧기획조정처는 기획평가팀과 기획예산팀을 둔다. ⑨입학관리처에는 입학관리팀을 둔다. ⑩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을 둔다. ⑪인재개발처에는 취·창업지원팀을 둔다. ⑫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을 둔다. ⑬감사실에는 감사팀을 둔다. ⑭교육혁신본부에는 교육혁신지원팀을 둔다. ⑮각종 국책사업 및 평가 대비 등을 위하여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⑯각 팀의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소속 팀원 10명 이상인 팀에는 부팀장을 둘 수 있으며,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⑰제1항 내지 제16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2 (캠퍼스전략본부) ①대학교에 캠퍼스전략 본부를 둔다. ②캠퍼스전략본부에 본부장 및 부분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분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캠퍼스전략본부에는 캠퍼스전략팀을 두며 팀장	③제1항의 조직에는 부처장, 부실장 및 부분부장을 둘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삭 제) ⑫ (삭 제) ⑬ (삭 제) ⑭ (삭 제) ⑮ (삭 제) ⑯ (삭 제) ⑰제1항의 조직 직제 및 업무 분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1조의2 (캠퍼스전략본부) (삭 제)	※ 하부조직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하부조직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상세 내용을 직제규칙에 위임 ※ 하부조직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백 연동 개 상 권 황 성 천

현행	개정안	비고
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3 (단과대학·대학원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둔다. ②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 설) 제92조 (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 임용하고, 부속시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부(副)의 장을 둘 수 있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의2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두며, 동법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분장업무는 산학협력단 장관으로 정하며,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3 (단과대학·대학원의 하부조직) ①(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제1항의 조직 직제 및 업무 분장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2조 (부속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삭 제) ④제1항의 조직 직제 및 업무 분장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2조의2 (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제1항의 조직 직제 및 업무 분장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하부조직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하부조직 관련 상세 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하부조직 관련 상세 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상세 내용을 직제규칙에 위임 ※ 산학협력단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상세 내용을 직제규칙에 위임

박인준 김상진 황성철

현행	개정안	비고
제92조의3 (수탁기관운영) ①현장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역사회봉사 등을 위하여 교육·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u>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할 수 있으며, 기타</u> 수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u>있으며, 기관별로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신설)	제92조의3 (수탁기관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u>있다.</u> ④제1항의 조직 직제 및 업무 분장 등 세부 사항은 <u>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	※ 수탁기관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수탁기관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상세 내용을 직제규칙에 위임
제93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u>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②도서관에는 <u>학술정보팀을 둔다.</u> ③학술정보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④ (삭제)	제93조 (도서관) (삭제)	※ 도서관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제93조의2 (정보전산원) ①정보전산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u>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할 수 있다.</u> ②정보전산원에는 <u>전자정보팀을 둔다.</u> ③전자정보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신설)	제93조의2 (정보전산원) (삭제) 부칙 (2023. 1. 26. 제465차 이사회 의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전산원 관련 상세내용 삭제 (직제규칙에 위임) ※ 부칙 신설 (시행일)

백영준	김상진	황성철
-----	-----	-----

【별첨 2】

신라대학교 직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박영학원 정관 제7장 제2절에 규정된 신라대학교 (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학교의 직제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기구) ①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두며,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1. 총장

2. 부총장

3. 하부조직

가. 총장 직속기관 : 감사실

나. 대학본부 : 사무처, 교육지원처, 학생지원처, 재무처, 기획조정처, 입학관리처, 국제교류처, 인재개발처, 대외협력실, 교육혁신본부, 캠퍼스전략본부

4. 단과대학·대학원

5. 부속시설

가. 부속기관

나. 부설기관

다. 부설연구기관

6. 산학협력단

7. 기타기관

② 대학교의 발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및 평가 대비 등을 위하여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총장 · 부총장

제5조 (총장)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 유고 시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부총장) 대학교에 3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제7조 (직속기관) ① 총장 직속기관으로 감사실을 둔다.

② 감사실에는 감사팀을 둔다.

박영동	김성진	황성철
-----	-----	-----

제3장 대학본부

- 제8조 (사무처) 사무처에는 총무팀과 시설관리팀을 둔다.
- 제9조 (교육지원처) 교육지원처에는 학사지원팀, 학적관리팀, 교직과정운영팀을 둔다.
- 제10조 (학생지원처)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팀을 둔다.
- 제11조 (재무처) 재무처에는 정리팀을 둔다.
- 제12조 (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에는 기획평가팀과 기획예산팀을 둔다.
- 제13조 (입학관리처) 입학관리처에는 입학관리팀을 둔다.
- 제14조 (국제교류처)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을 둔다.
- 제15조 (인재개발처) 인재개발처에는 취·창업지원팀을 둔다.
- 제16조 (대외협력실)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을 둔다.
- 제17조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본부에는 교육혁신지원팀을 둔다.
- 제18조 (캠퍼스전략본부) 캠퍼스전략본부에는 캠퍼스전략팀을 둔다.

제4장 단과대학 · 대학원

- 제19조 (단과대학 · 대학원)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다.
- ② 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와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장 부속시설

- 제20조 (부속기관) ① 도서관에는 학술정보팀을 둔다.
- ② 정보전산원에는 전자정보팀을 둔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외한 부속기관에는 교학팀 및 행정팀을 둘 수 있다.
- ④ 부속기관의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21조 (부설기관 · 부설연구기관) ① 부설기관에는 교학팀 및 행정팀을 둘 수 있다.
- ② 수탁형 부설기관에는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부설기관과 부설연구기관의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장 산학협력단

- 제22조 (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박연희	김성진	황성철
-----	-----	-----

② 학교기업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장 기타기관 등

제23조 (한시적 조직) ① 각종 국책사업 및 평가 대비 등을 위하여 한시적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한시적 조직에는 행정팀을 둘 수 있다.

제24조 (각종 위원회 및 기타 기관) ① 대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기관의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8장 보직 및 임기

제25조 (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제26조 (직속기관 보직) ① 감사실에는 실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실에는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대학본부 처장·본부장) ① 교육지원처, 학생지원처, 입학관리처, 국제교류처, 인재개발처, 교육혁신본부에는 각각 처장, 본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② 기획조정처에는 처장을, 캠퍼스전략본부에는 본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재무처에는 각각 처장을 두며,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④ 대외협력실에는 실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제28조 (대학본부 부처장·부분부장) ① 교육지원처, 학생지원처, 기획조정처, 입학관리처, 국제교류처에는 각각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② 캠퍼스전략본부에는 부분부장을 둘 수 있으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제29조 (팀장)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30조 (부팀장) 소속 팀원 10명 이상인 팀에는 부팀장을 둘 수 있으며,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백인준	김상진	황성진
-----	-----	-----

- 제31조 (단과대학·대학원 보직) ①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에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③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④ 대학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제32조 (부속시설 보직) ①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거나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 할 수 있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부(副)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③ 기관별 기획자문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거나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 할 수 있다.
- 제33조 (산학협력단 보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거나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 할 수 있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재임명할 수 있다.
- 제34조 (한시적 조직, 각종 위원회, 기타기관 보직) 한시적 조직, 각종 위원회, 기타기관에는 각각 장과 부(副)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기는 따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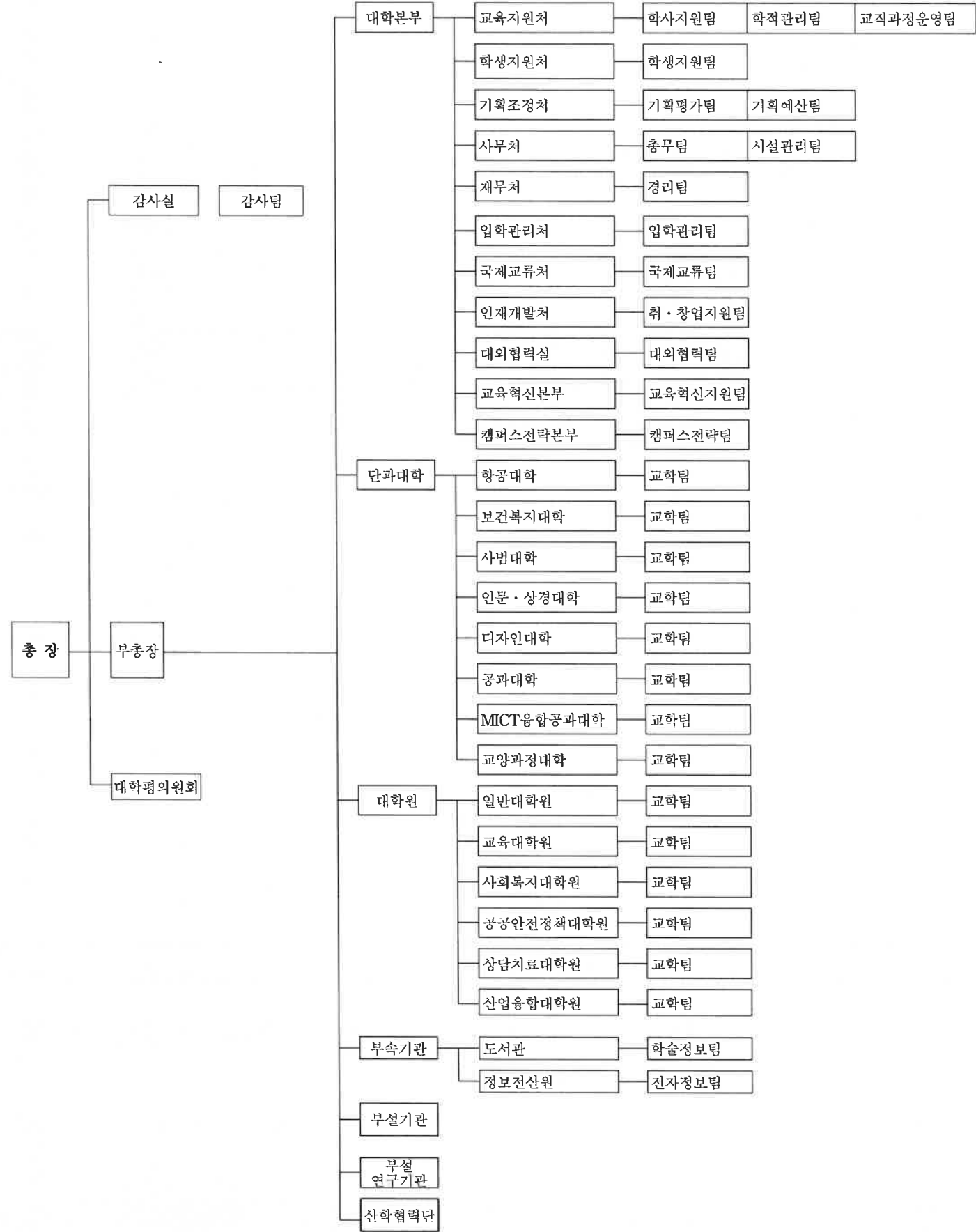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구설치와 보직임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박영훈	김성진	황성철
-----	-----	-----

[별표 1]

신라대학교 기구표



백 연필 강명호 황성철

【별첨 3】

학교법인 박영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및 학교법인 박영학원 「정관」 제88조의3 에 따라 학교법인 박영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법인 정관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임원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법인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신라대학교 및 신라중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소속 기관의 장”이란 신라대학교 총장과 신라중학교 교장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허가, 승인, 검사, 점검, 지도, 평가,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법인 및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 아.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5.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이란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원 및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말한다.
 - 가.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 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임원 및 교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원 및 교직원
 - 라.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정하는 임원 및 교직원
6.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박영학원	김정리	황성철
------	-----	-----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법인과 학교에 속한 모든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관계의 우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명예 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원 및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4.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법인과 학교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법인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박영환	김성진	홍성진
-----	-----	-----

② 입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시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 또는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법인이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입시 참여 제한) ① 임원은 학교의 입시에 가족이 합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시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입시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지원한 입학전형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합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특혜의 배제)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박영준	김상진	황성철
-----	-----	-----

제10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원 및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원, 교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학교재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법인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향응·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백 연동	김성진	홍성철
------	-----	-----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원 및 교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해당 임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백 연필	김상진	황성진
------	-----	-----

제23조(교육)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명) ① 이사장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상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소속 기관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강령의 개정) 이 강령의 개정은 이사장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박연홍	김상진	황성철
-----	-----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허가, 승인 등, 2. 지도, 평가 등, 3. 감사, 조사 등, 4. 계약, 5. 민원,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7.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박영준	김성진	황성진
-----	-----	-----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원 및 교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 직무 관련 업무 1. 허가, 승인 등 [] 2. 지도, 평가 등 [] 3. 감사, 조사 등 [] 4. 계약 [] 5. 민원 []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 7. 기타[구체적 기재 :]	
	※ 직무관련자 1. 자신 [] 2. 배우자 [] 3. 4촌 이내 친족 [] (구체적 기재 :) 4.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5. 자신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 6.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 7. 자신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 8.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 9. 특수관계사업자 [] 10. 기타 []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백영훈	김성진	정성현
-----	-----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박영환	김성진	황성철
-----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박 연홍	김성진	황성철
------	-----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박인환	김성권	황성현
-----	-----	-----